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-71호

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21일

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이유

개정 「여신전문금융업법(‘18.2.21일 공포, 8.22일 시행)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(안 제1조의2)  
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.

나.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(안 제2조의2)

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·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,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.

다.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·이용에 대한 조치(안 제6조의17 및 별표 4)  
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 
설치·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,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  
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,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 
신용카드 단말기 설치·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.

라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(안 제15조 및  
별표 5 신설)

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  
시 필요한 소득·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 
있는 근거를 마련함.

마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(안 제17조)  
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(총자산의 30%) 이내로 관  
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  
을 포함하고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대출에  
대해서는 대출금의 80%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.

바.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 
마련 (안 제19조의18)

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 
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  
명령, 주의·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사.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(안 별표 1의4)

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  
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중소기업금융과, 전화 : 02-2100-2992, 팩스 : 02-2100-2999, 이메일: yangbg84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